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Children, Youth, and Families

공적 부담: 이민 정책 변동 개정안 영유아 조기 지원(ESIT) 서비스 수혜 가정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란 무엇인가요?

"공적 부담" 심사는 100년 넘게 연방 이민법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심사는 주 소득원을 정부의 복지 수당에 의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공적 부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현재 기존의 "공적 부담" 정책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적 부담 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공적 부담 정책은 일부 이민자 가정에 적용됩니다. 현행 정책의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 초청 비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그린 카드)을 신청한 미국 내 이민자
-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민자

다음은 현행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입니다.

- 미국 시민권을 신청한 합법적 영주권자
- 난민, 망명 신청자, 가정 폭력 생존자, T 또는 U 비자 신청자 및 소지자, 청소년 특별 이민자 신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을 원하는 아동을 포함한 합법적 신분을 가진 대부분의 이민자

개정안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현행 정책:

- 다음의 복지 혜택이 유일하게 "공적 부담" 대상자의 판별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TANF) 등 현금 지원
 - 정부 비용을 통한 장기 요양 혜택

규칙 개정안에서 정부는 개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타 복지 수혜도 고려하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복지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 응급 Medicaid
-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 Medicare 파트 D 저소득층 보조
- 공공 주택 거주 또는 섹션8 주거선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 주거 지원

또한 규칙 개정안은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소득 기준이 포함됩니다.

가족이 알아야 할 중요 정보:

- **이 규칙 개정안은 현행법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확정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규칙이 확정되면 최종 개정안이 게시된 후 수 주 또는 수개월 후에 발효될 수 있습니다.
- **이 규칙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정안이 확정되어 발효되기 전에 사용된 복지혜택(현금성 또는 정부 비용의 장기 요양 이외)은 공적 부담 판단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공적 부담 제도는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 모두 고려합니다.** 법이 개정되어도 공적 부담 수혜로 인해 이민 신청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 당국은 향후 공적 부담 대상자로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모든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연령, 건강, 소득, 자산, 자원, 교육/기술, 부양 가족 및 귀하를 부양할 가족이 포함됩니다.
- **영유아 조기 지원(ESIT) 서비스는 공적 부담 심사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더라도 ESIT 서비스 등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Medicaid에 청구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공적 부담 심사의 일부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가족을 위한 최선의 방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구하시고 가능하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저비용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관을 찾으시려면 <https://www.immigrationadvocates.org/nonprofit/legaldirectory/>에서 확인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 로컬 리소스 목록에 액세스하시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